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93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이양수・이종배・강선영

박덕흠 • 이인선 • 김종양

배준영 · 조경태 · 이철규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 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 항·제2항·제4항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의 제목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를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를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를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를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로 한다.

제79조제3호 중 "사고기록장치"를 "사고기록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이 법 시행 이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
	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
	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
	<u>능을 말한다.</u>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u>사고기록장치</u> 의 장착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및 페달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	<u>영상기록장치</u>
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 ①
원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사고기록장치</u> 를 장착하여야	사고기록
한다.	<u>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u>
	<u>.</u>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②
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	

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u>경우</u> 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사고기록장치</u>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u>통지</u>,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2. (생략)
 -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 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 한 자
 - 4. ~ 19. (생략)

<u>경우에</u>	_
는 사고기록장치 및 페달영상	-
<u>기록장치</u>	-
③ (현행과 같음)	
4	-
사고기록장치 및 페	
달영상기록장치	-
통지와 사고기록장치	
<u> </u>	-
	-
	-
<u>.</u>	
제79조(벌칙)	-
	-
	-
1.•2. (현행과 같음)	
3	-
사고기록장치 및 페달영상기	
<u>록장치</u>	-